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공원녹지과-3638
등록일자	2015.2.10.
결재일자	2015.2.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조경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병영	성손준	한정훈	배경섭	02/11 배경섭	
협조자					

- 2014년 제1회 추경사업 「강변 시설녹지 보수정비공사」 -
사 고 이 월 (구 비) 계 획 보 고



2015. 02. .

강 남 구
(공 원 녹 지 과)

- 2014년 제1회 추경사업 「강변 시설녹지 보수정비공사」 -

사고이월(구비) 계획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편성)사업 「강변 시설녹지 보수정비공사」 추진 관련하여 동절기 공사 착공(2014.12.)후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 기한을 2015.04.20일로 연장하였으므로, 2014 회계연도 도시계획시설 녹지 정비 추경 예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이월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강변 시설녹지 보수 · 정비공사
- 위 치 : 압구정동 107-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식 재 공 : 사철나무, 맥문동 등 관목·초화 13종
 - 시설물공 : 목재데크 등 7종
 - 포 장 공 : 고무매트 등 3종
 - 부대공사 : 1식
- 총공사비 : 금264,013,450원(구비)
 - 도급비 200,928,000원, 관급자재비 63,085,450원
- 공사기간 : 2014. 12. 09. ~ 2015. 04. 20.
- 도급업체 : (주)엘에프네트웍스 대표 김민호

II 추진 현황

- 2014. 11. 21. : 공사발주
- 2014. 12. 08. : 공사계약
- 2014. 12. 09. : 공사착공
- 2014. 12. 15. : 동절기 공사중지 통보(→도급업체)

2015. 01. 09 : 공사기간 연장

※ 당 초 : 2014. 12. 09 ~ 2015. 01. 17

변 경 : 2014. 12. 09 ~ 2015. 04. 20

III 사고이월 상세

세부 내역

※ 명기한 사고이월액 중 괄호내 금액은 관급(지급)자재비로 원인행위 미필금액임

세부사업명	2014 회계연도 예산			지출원인행위 (2014.12.31. 기준)	지 출 액 (2015.2.28기준)	2015 회계연도 이월예산		집행 잔액	이월사유
	통계목 (과목코드)	예산 현액	배정액	금액	금액	이월액	준공예정 년월일		
총 계		312,660,000	312,660,000	211,738,080	10,810,080	264,013,450 (63,085,450)		37,836,470	
강변 시설녹지 보수·정비공사	시설비 401-01	312,660,000	312,660,000	211,738,080 ※설계비 포함	10,810,080	264,013,450 (63,085,450)	2015.4.20	37,836,470	- 아래 참조

사고이월 사유

- 원인행위필액(도급비200,928,000원) :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14. 11. 21일 사업 발주하여, '14. 12. 08일 공사계약(원인행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수목 생육 부적기임을 고려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통보후 공사기간 연장하여 본 공사 사업비 사고이월 현재 사업착수가 불가한 관계로 회계연도내 도급비 지출 불가

- 원인행위 미필액(관급자재비 63,085,450원)

-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본 공사에 부대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종(從)된 관급(지급)자재비로,
- 본 공사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구체적·별도의 관급자재비 지출이 발생되나,
- 사고이월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통보로 사업 착수가 불가하여 관급자재 구매비 지출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아 구체적인 관급(지급)자재비 원인행위를 할 수 없음

예산 과목 : 공원녹지과, 도시개발, 녹지조성및정비, 강변시설녹지(오솔길)보수및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구비)

IV 보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2014 회계연도 도시계획시설 녹지정비분야 추경사업 예산 전액을 사고이월하여 본 사업의 추진목적 및 공사(수목식재 및 포장공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붙임 1)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공사도급 내역서 1부
3) 지출집행(원인행위)증빙서류 2부. 끝.